



제426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대학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근거규정 마련〉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114호)

2025. 6.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신영대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5.
3. 회부연월일 : 2025. 4.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사무직원은 사학연금 적용대상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없음. 반면, 동일한 사립학교 내 교원의 경우 2020년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공립 교원 수준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사무직원에게는 유사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학교 내 동일한 근로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사학연금 공단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중 직원의 육아 휴직 사용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으며, 교원에 비해 직원의 사용 비율이 두 배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확인됨.

이에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수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

대를 해소하려 함(안 제70조의8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하도록 하고, 휴직하는 사무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신설>	<u>제70조의8(사무직원의 육아휴직)</u> ① <u>사무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사무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휴직을 원하면 그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라 휴직하는 사무직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¹⁾을 받는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²⁾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학교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적용한다.

1.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 및 학교경영기관 중 특히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

2)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5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쓸 수 있으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³⁾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⁴⁾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음.

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은 「사립학교법」에 육아휴직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아휴직이 허용되며, 육아휴직이 유급인지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사립학교 교직원(유치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비교⁵⁾해보면, 2024년 기준 육아휴직 사용 교원은 1,533명으로 사학연금가입자 전체 교원의 1.99%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 이에 비해 2024년 육아휴직 사용 직원 수는 85명으로 전체 직원의 0.79%가

1. 삭제 <2019. 1. 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6개월째까지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7개월째 이후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월별 지급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160만원

5) 불평등한 육아휴직의 여건: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제도 개선 과제(입법조사처, 2025.4.7.)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음.

< 사립학교 교원 및 직원의 육아휴직 사용 현황⁶⁾ >

(단위 : 명, %)

구분	교원 수	사용자 수	비율	직원 수	사용자 수	비율
2019	92,017	1,563	1.70	12,435	67	0.54
2020	88,531	1,541	1.74	11,709	85	0.73
2021	85,253	1,567	1.84	11,242	84	0.75
2022	82,632	1,612	1.95	11,119	96	0.86
2023	79,941	1,588	1.99	10,989	94	0.86
2024	77,135	1,533	1.99	10,741	85	0.79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상을 고려했을 때, 사립학교 직원은 육아휴직에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휴직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참고로 동일한 목적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⁷⁾이 발의되어 있는바,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데 있어 두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휴직수당 뿐만 아니라 승진, 보수 등 신분 및 처우에 대해 광범위하게 규정하는 반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용보험상 수당만을 규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교육부는 교원과 달리 육아휴직 및 수당 지급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무직원의 불형평성 해소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

6) 대학교 및 대학병원은 제외함

7) 의안번호 제2209777호,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한 일·가정 양립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및 수당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무직원이 근무조건과 복지측면에서 교원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사무직원도 교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보장 받는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에 공감하나, 공립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휴직할 경우 대체할 인력 확보가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장로회신학대학교는 사무직원 휴직수당 지급 규정 신설시 휴직수당 및 대체인력 임금 부담이 매우 가중되며, 사학연금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서울여자간호대학교는 임용권자의 휴직 승인 의무화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립학교의 제한된 예산 내에서 휴직 직원의 수당과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은 감당이 불가능하므로 강제되어선 안되고, 일정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대진대학교는 육아휴직수당 및 대체인력 인건비 부담이 크므로 육아휴직 기간은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며, 국가 차원의 지원책 또는 사학연금의 지원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8